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10호

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「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5호, 2023.2.1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 1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

(단위 : 천원/m²)

항 목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	지하층건축비 (지하층면적기준)
직접공사비	1,252	665
간접공사비	511	268
설계비	43	
감리비	17	
부대비	120	

주1) 지상층건축비는 16~25층 이하, 주거전용면적 60m²초과~85m² 이하를 기준으로 함

주2)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

- 직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71.0%
- 간접공사비 = [해당 지상층건축비 - (설계감리비 및 부대비)] × 29.0%